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3누111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◯◯
	담당변호사 ◯◯◯
피고, 피항소인	◯◯시장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구합61428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11. 8.
판 결 선 고	2023. 12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9. 9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62,733,410원, 지방교육세 38,667,280원, 농어촌특별세 19,333,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4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7쪽 10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.

『 마)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, 적어도 이 사건 지하매설물의 발견이라는 원고 주장의 착공지연사유가 없었더라면 위 기간 내에 착공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.

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,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, 벌목이나 수목 식재,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,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(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 참조)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거의 만료되기 직전인 이 사건 지하매설물 발견 무렵에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 착수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야 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2-23

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파일을 박을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정도로 설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20. 2.경에야 위 설계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, 이 사건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2019. 4.경까지는 구체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, 이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지하매설물 발견이라는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의 기간이 도래하는 2019. 4. 말경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』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